# 한국투자공사 정관

제 정 2005. 6. 30.(재정경제부 장관 인가)

개 정(1) 2007. 2. 7

개 정(2) 2008. 4.16

개 정(3) 2011. 11. 16

개 정(4) 2014. 5.28

개 정(5) 2016. 2.18

개 정(6) 2019. 3.22

개 정(7) 2023. 6.16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①공사는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한다.
  - ②공사의 영문명칭은 "Korea Investment Corporation(KIC)" 으로 표기한다.
- 제3조(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공사는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 ②정부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출자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공사는 설립의 등기 또는 자본금의 증액에 따른 출자의 납입이 있은 후에 출자기관에게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제5조(정관의 변경)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정관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 공사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이외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공사에 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자산위탁기관장의 위원자격 취득)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위탁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였거나, 기준금액 이상을 위탁하겠다는 확약서를 공사에 제출한 때부터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약서에는 공사가 요청하는 시기에 자산을 위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탁기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시기에 자산을 위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위탁자산의 회수 등으로 인해 위탁자산의 총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자산운용 결과에 따른 위탁자산의 일시적인 가치변동은 위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 3. 공사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4. 공사의 자본증감 등 재무상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7.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8. 공사의 경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9.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 시행령이나 정관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 ③정기회의는 매분기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⑥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와 회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⑦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원·직원을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의결방법)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그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지정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의결권 행사의 제한)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당해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13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14조(위원의 수당) 운영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활동한 운영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또는 그 대리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운영규정) 법, 시행령 또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이사회

- 제16조(이사회) ①공사에 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 3. 공사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이사회는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공사에 임원·직원으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7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①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8조(의결권 행사의 제한) 이사회의 의결에 있어 당해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19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20조(이사회 운영)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4장 임원 및 직원

- 제21조(임원) 공사에 사장 1인, 이사 4인 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 제22조(임원의 임면) ①공사의 사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 ②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 ③감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 제2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 3. 운영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 제2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은 3년을 임기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하다.
  -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제24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 ②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영관리담당 이사가, 사장 및 경영관리담당 이사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⑤감사는 매년 감사결과를 종합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또는 회계처리와 관련한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지체없이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25조(대표권의 제한) ①사장 또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영관리담당 이사 또는 임원·직원은 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2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

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한다.

- 제28조(직원의 임면)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 ②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과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 제29조(관계기관 직원 등의 파견요청) ①사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 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은 파견인원, 파견기간 및 파견요청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파견직원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 ④사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업 무

제30조(업무의 범위)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정부 등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 2. 제1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 ②공사는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신용보증 등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하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 3. 삭제

- 4.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 5. 국내 · 외 부동산의 매매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②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③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 ④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매입 등 안정적·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장 회 계

- 제32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3조(회계원칙) 공사의 회계는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경리하여야 한다.
- 제34조(회계처리의 구분) ①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②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35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①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 ②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36조(예산 및 결산)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전 회계연

도의 예산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공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7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승인) ①공사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동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②추가경정예산의 승인절차는 본 예산의 승인절차에 의한다.
- 제38조(예비비) ①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②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③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상여금과 퇴직위로금) 공사는 임원과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하는 임원과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0조(연구비와 해외파견비) 공사는 우수한 직원 또는 그 밖의 적격자에게 연구비 또는 해외파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1조(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3. 국고에의 납입
  -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 제7장 보 칙

제42조(공고의 방법) ①법 제36조에 의한 공고는 위원회의 결산승인 후 2월 이내

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중장기 투자정책은 투자 정책의 결정 및 변경시,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 변경은 변 경사실 발생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운용전문 인력의 변경은 변경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 제43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장이 위촉한다.
  - ③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예우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행위) ①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립위원회가 공사설립에 따른 제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첫 회계연도는 공사가 설립된 후 업무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업무계획·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사는 설립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의 업무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공사 설립 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기전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위원회 개최시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공사 임직원의 인건비, 사옥 임차료 등 공사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2. 공사설립과 관련된 비용

제5조(정관작성 및 서명)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회 위원장 및 설립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다.

#### 2005년 6월 27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재정경제부 차관 박 병 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번지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김 인 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2번지 자산운용협회 전무이사 이 갑 수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4-1번지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김 공 진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황 영 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A동 1403동 한국증권업협회 부회장 박 용 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장 옂

### 부 칙 (2007.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2.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3.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6.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6월 16일 부터 시행한다.